

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

습기로운 보육활동 보호생활

5편: 성폭력 범죄 / 성희롱



한국보육진흥원



보육활동보호센터 담플



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: 성폭력 범죄

개념

강제추행, 강간, 공중 밀집장소 추행,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,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,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, 촬영물 이용 협박·강요 등 행위

※ 법적근거 :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

● 성폭력 범죄(카메라 등 이용 촬영) 성립요건

요건	확인
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기를 이용하여	<input type="checkbox"/>
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	<input type="checkbox"/>
그 사람(촬영 대상자)의 의사에 반하여	<input type="checkbox"/>
촬영	<input type="checkbox"/>



예시

- 보육교사를 허락 없이 등 뒤에서 근접 촬영하거나, 앉은 자세나 움직임을 의도적으로 확대 촬영해 단독방에 공유하는 경우
- 보육교사의 얼굴이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두고 성적 언급이나 평가를 하는 경우
- 촬영 뿐 아니라 해당 영상을 전송, 유포, 보관하는 경우
- 보육교사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하거나 음란한 동영상, 사진, 내용 등을 보육교직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경우

판례



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,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함

[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도3182 판결]





보육활동 침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?: 성희롱

개념

보육활동 중인 보육교직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

● 성희롱 성립요건

요건	확인
보육교직원의 의사에 반하여	<input type="checkbox"/>
성적언동으로 인해	<input type="checkbox"/>
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육체적, 언어적, 시각적 행위	<input type="checkbox"/>

예시

- 보호자가 보육교사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여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
- 불필요하게 신체에 접촉하거나 동의 없이 안마를 하며 쓰다듬거나, 스킨십을 하려는 시도를 함
- 음란한 농담을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
- 교사의 사생활(연애, 결혼 등)에 대해 성적 맥락의 질문이나 언급을 지속함

판례



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, 당사자의 관계,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,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, 행위의 내용 및 정도,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지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,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,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

[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두22498 판결]

